

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627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6. 1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- 지방행정조직 기능조정으로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그 동안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서간 업무조정과 그에 따른 관련조례를 개선보완하기 위함

2. 주요골자

- 부서간 업무조정 (안 제3조)
 - 문화관광과에서 → 자치행정과로 이관
 - 대외협력교류 및 자매결연사업
 - 군민의식개혁 및 건전생활운동추진
 - 각종사회단체 관리
 - 문화관광과에서 → 기획감사실로 이관
 - 발전추진위원회 운영
 - 교육(학교)운영에 관한사항
 - 재무과에서 → 기획감사실로 이관
 - 경영수익에 관한 사항
- 업무소관부서의 명확화 (안 제3조)
 - 군민의날 행사 추진(문화체육부문 제외) : 자치행정과
 - 분뇨처리장 등 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운영 총괄 : 환경녹지과

3. 참고사항

- 근거법령
 - 지방자치법 제102조내지 제106조(행정기구의 설치운영)
 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0조

4. 본 문 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3조제2항제1호가목중 “시책토론회에 관한 사항”다음에 “발전추진위원회 운영, 교육(학교)에 관한 사항, 기타 실과간의 업무 조정”을 삽입하고, 동호라 목중 “재정운용에 관한 사항”다음에 “경영개발 및 수익 등에 관한 사항”을 삽입하고, 동조동항제2호나목중 “군민의 날 행사(의전부문)”을 “군민의 날 행사(문화체육부문 제외)”로 하며, 동호 마목을 사목으로, 라목을 바목으로, 다목을 마목으로 하고 다목 및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다. 대외협력 및 교류, 자치단체의 자매결연사업에 관한 사항
- 라. 군민의식개혁 및 건전생활운동 추진, 각종사회단체 지원 및 관리

동조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문화관광과장

- 가. 문화재 및 사찰의 보호관리, 종교업무, 문화·예술진흥의 종합기획추진에 관한 사항
- 나. 군민의날 행사(문화체육부문) 및 각종문화예술행사 추진 등에 관한 사항
- 다. 관광기획·개발 및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
- 라. 각종 군정 홍보·보도에 관한 사항
- 마. 체육진흥 및 행사지원과 관련시설 관리

동조동항제5호마목을 삭제하고, 동조동항제8호나목중 “폐기물 관리·지도·감독” 다음의 “쓰레기 매립장 관리”를 삭제하며, 동조동호중 “라목을 마목으로,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다. 분뇨위생처리장 및 쓰레기매립장 등 환경시설의 총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실·과의 설치) ①(생략) ②(생략)</p> <p>1. 기획감사실장</p> <p>가. 군정 기획조정·분석평가·지 시사항, 의회업무 총괄, 제안제 도 및 시책토론회에 관한 사항 <u><추가></u></p> <p>나.~다. (생략)</p> <p>라. 예산의 편성 및 재정운용에 관 한 사항 <u><추가></u></p> <p>마. (생략)</p> <p>2. 자치행정과장</p> <p>가.(생략)</p> <p>나. 의식·행사, 복무·직장보수교 육, 후생복지, 문서, 공인, 보 안·비상대책, <u>군민의 날 행사</u> (의전부문) 및 <u>군민상</u>에 관한 사 항</p> <p>다. 전산 정보·통신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</p> <p>라. 민방위, 소방에 관한 사항</p> <p>마. 120 민원기동대 운영, 현장생 활·순회 기동민원 처리, 농어 촌 보안등 관리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문화관광과장</p> <p>가. <u>대외협력 및 교류, 자치단체의 자매결연사업, 발전추진위원회 운영, 교육(학교)에 관한 사항</u></p>	<p>제3조(실·과의 설치) ①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가. ----- -----, <u>발전추진위원회 운영, 교육(학 교)에 관한 사항, 기타 실과간 의 업무 조정</u></p> <p>나.~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라. ----- -----<u>경영개발 및 수 익 등에 관한 사항</u></p> <p>마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가.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----- -----<u>군민의 날 행사(문 화체육부문 제외)</u>-----</p> <p>다. <u>대외협력 및 교류, 자치단체의 자매결연사업에 관한 사항</u></p> <p>라. <u>군민의식개혁 및 건전생활운 동 추진, 각종 사회단체 관리</u></p> <p>마. ----- 바. ----- 사.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가. <u>문화재 및 사찰의 보호관리, 종교업무, 문화·예술진흥의 중 합기획추진에 관한 사항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나. <u>국민의식개혁 및 건전생활운동 추진,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운동단체육성관리, 각종 사회단체육성지원 총괄</u></p>	<p>나. <u>국민의날 행사(문화체육부문) 및 문화예술행사추진 등에 관한 사항</u></p>
<p>다. <u>문화재 및 사찰의 보호관리, 종교업무, 문화·예술진흥의 종합기획 추진에 관한 사항</u></p>	<p>다. <u>관광기획·개발 및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</u></p>
<p>라. <u>관광진흥 및 개발에 관한 사항</u></p>	<p>라. <u>각종 군정 홍보·보도에 관한 사항</u></p>
<p>마. <u>군정 홍보·보도에 관한 사항과 체육진흥 지원 및 관련 시설관리</u></p>	<p>마. <u>체육진흥 및 행사지원 및 관련시설 관리</u></p>
<p>5. 재무과장</p>	<p>5.-----</p>
<p>가.~라. (생략)</p>	<p>가.~라. (현행과 같음)</p>
<p>마. <u>경영개발 및 수익등에 관한 사항</u></p>	<p>마. <삭제></p>
<p>6.~7.(생략)</p>	<p>6.~7. (현행과 같음)</p>
<p>8. 환경녹지과장</p>	<p>8.-----</p>
<p>가. (생략)</p>	<p>가.(현행과 같음)</p>
<p>나. <u>청소행정의 총괄기획, 조정, 폐기물 관리·지도·감독, 쓰레기매립장 관리, 자연보호 활동에 관한 사항</u> <신설></p>	<p>나. -----, -----,<삭제> ----- -----</p>
<p>다. <u>조경 및 가로수 식재관리, 조림, 양묘사업, 사방 및 임도시설, 전원화사업, 산촌개발사업, 산림내 토사석 채취 허가, 임업단체 지도 감독</u></p>	<p>다. <u>분뇨위생처리장 및 쓰레기매립장 등 환경시설의 총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</u></p> <p>라.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라. <u>육림사업, 산림병해충 방제, 보호수 관리, 야생조수 보호, 산불방지, 산지정화</u></p>	<p>마. ----- ----- -----</p>